

- c. 1. Collection instructions should bear the complete address of the drawee or of the domicile at which the presentation is to be made, if the address is incomplete or incorrect, the collecting bank may, without any liability and responsibility on its part, endeavour to ascertain the proper address.
2. The collecting bank will not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ensuing delay as a result of an incomplete/incorrect address being provided.

Ⅰ 제4조 [추심지시서]

- a. 1. 추심을 위하여 송부되는 모든 서류에는 추심은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간행물번호 522에 의함을 명시하고, 완전하고 정확한 지시가 기재된 추심지시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은행은 이러한 추심지시서에 기재된 지시 및 본 규칙에 따라서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은행은 지시를 찾기 위하여 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한다.
3. 추심지시서에 별도의 수권이 없는 한 은행은 추심을 의뢰한 당사자/은행 이외의 어느 당사자/은행으로부터의 어떠한 지시도 무시한다.
- b. 추심지시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 자료를 적절하게 포함하여야 한다.
 1. 정식 명칭, 우편 및 스위프트 주소, 텔렉스전화팩스번호를 포함한 추심의뢰은행의 명세
 2. 정식 명칭, 우편주소,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텔렉스전화팩스번호를 포함한 추심의뢰인의 명세
 3. 정식 명칭, 우편주소 또는 제시가 행하여질 환어음 지급장소 및 해당되는 경우 텔렉스전화팩스번호를 포함한 환어음 지급인의 명세
 4. 정식 명칭, 우편주소 및 해당되는 경우 텔렉스전화팩스번호를 포함한 만일 있는 경우 제시은행의 명세
 5. 추심되는 금액과 통화
 6. 동봉서류의 목록과 각 서류의 통수
 7. a. 지급 및/또는 인수받는 조건
b. 서류의 인도조건
 - 1) 지급 및/또는 인수
 - 2) 기타 조건
추심지시서를 준비하는 당사자는 서류의 인도조건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술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수수료라 포기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시한 추심수수료
 9.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이자가 포기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시한 추심이자